

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로 인해 지뢰대응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·인력 또	법 제28조 제1항제1호	300	300	300

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			
나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지뢰등의 탐지·제거 업무에 착수한 경우	법 제28조 제2항제1호	150	175	200
다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28조 제2항제2호	150	175	200
라.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접근 차단 조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출입한 경우	법 제28조 제2항제3호	100	125	150
마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28조 제2항제4호	200	200	200
바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28조 제2항제5호	200	200	200
사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8조 제1항제2호	300	300	300
아.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28조 제2항제6호	200	200	200
자.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8조 제2항제7호	100	125	150